

■ 화제의 뉴스 ■

2. 턴키 비리부정 적발되면 사실상 영업 어려워져

턴키입찰에서 심의와 관련해 건설사 소속직원(퇴직자 포함)이 비리·부정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면 적발일로부터 2년간 턴키심의에서 10점씩 감점을 받게 되었습니다.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'을 확정,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원인행위부터 적용되어, 소급적용은 배제되었습니다. 업체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(운영규정 별표 12).

[관련 링크]

- [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\[시행 2012. 7. 5.\] \[국토해양부훈령 제844호, 2012. 7. 5., 일부개정\]](#)
- [턴키비리·부정 적발되면 턴키영업 접어야 - 건설경제신문 | 2012. 7. 10.](#)